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석유 및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1. 개정이유

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 석유제품 공매는 공급처에 포함되지 않아 석유판매업자들의 공매 참여에 제한이 있음. 이에 압류 석유제품 공매 시 석유판매업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공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 확대(안 제2조)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압류한 석유제품을 매각하려는 세무서장,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매각 행정기관이라 칭하고, 석유판매업자에게 공급 가능한 공급처 중 하나로 매각 행정기관을 추가(안 제2조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을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다른 일반대리점 또는 매각 행정기관(「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석유제품을 매각하려는 세무서장,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조 제2호 중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로부터”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로 한다.

제2조 제3호 중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부터”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로 한다.

제2조 4호 중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로 한다.

제2조 5호 중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또는 용제대리점”을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용제대리점 또는 매각 행정기관”로 한다.

제2조 6호 중 “생산판매업자 또는 다른 부생연료유통판매소로부터”를 “생산판매업자, 다른 부생연료유통판매소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일반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 용제(溶劑), 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1. ----- -----, 다른 일반대리점 또는 매각 행정기관(「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석유제품을 매각하려는 세무서장,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 -----.		
1의2. (생 략)		1의2. (현행과 같음)		
2. “용제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제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2. ----- 석유수출입업자, ----- 생산판매업자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 -----.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		3. ----- ----- 주유소, ----- ----- ----- 같다)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 ----- ----- ----- -----		

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등유 또는 경유를 주유소로부터 공급받거나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는 일반판매소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

-----.

4. -----
-----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

-----,

-----.

5. “용제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또는 용제대리점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기 또는 수송장비(적재용량이 8킬로리터 이하인 수송장비만 해당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6. “부생연료유판매소”란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또는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로부터 부생연료유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 또는 실소비자[가정용을 제외한 보일러 또는 노(爐)의 연료로 사용하는 소비자만 해당한다]에게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7. ~ 11. (생략)	5. ----- ----- <u>생산판매업자, 용제 대리점 또는 매각 행정기관</u>----- ----- ----- ----- -----. 6. ----- <u>생 산판매업자, 다른 부생연료유판매 소 또는 매각 행정기관</u>----- ----- ----- ----- -----. 7. ~ 11.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5226